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관리, 노동사고의 보험자금에 가입 기준, 조세 및 세관에 대한안 내의 업데이트

2017年5月



Contents

1.



고정자산의 관리, 사용과 감가상각 제도의 안내는 2017/05/26일에 발효되고 2016년의 재정년도부터에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한다.

2.



노동사고와 직업병의 보험자금 가입기준을 0,5% 까지로 2017/06/01일부터 감소한다.

3.



보건 전용의 공구, 설비에 대한 VAT세율이 5% 나 10% 인지?

4.



계약집행보장을 위한 계약서명직후 선지급금의 항목에 대한 영수증발급을 아직 하지않다.

5.



특허권 사용료는 물건수입의 가치과세금액에 합해야 준다.

1. 고정자산의 관리, 사용과 감가상각 제도의 안내는 2017/05/26일에 발효되고 2016년의 재정년도 부터에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한다.

재정부는 통지 제28/2017/TT-BTC호를 발급해서 고정자산의 관리, 사용과 감가상각 제도의 안내하는 2013/04/25일의 제 45/2013/TT-BTC호 통지서와 2016/10/13일의 제147/2016/TT-BTC호 통지서의 내용을 변경, 보충해준다.

변경내용의 주목된 점은 기업에 대한 법규에 따른 생산 영업목적용이면서 판매혹은 임대목적용의 혼합 건물(집) 인 각 자산의 경우에 기업은 매 사용목적에 따른 혼합건물의가치분을 따로 결정하고 결산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생산 영업목적용이면서 판매혹은 임대목적용(재정임대경우의 제외) 혼합건물(집)인 자산 (면적)의 가치분인 경우에: 기업은 관리, 사용, 고정자산인 자산분(면적)의 가치를 확인, 명기 하고 규정대로 감가상각처리를 한다.
- 기업은 판매목적의 혼합 건물중 자산분 (면적)의 가치를 고정자산으로 처리 할수없고 오직 판매자산처럼 책킹한다.
- 매 사용목적에 대한 각종자산의 가치와 자산 감가상각분배를 위한 확정기준은 공사항목 결산가치에 대한 각 사용항목의 매 면적분의 가치비중에 근거한다; 혹은 각 사용항목의 실제 사용면적분에 근거해서 결산한다.。
- 생산 영업목적용이면서 판매혹은 임대목적용 혼합 건물(집)인 자산(면적)을 가진 기업은 따로 가치를 구분할수 없으면 기업은 그런 전부의 자산(면적)가치를 규정처럼 고정자산임으로 감가상각처리를 결산할수 없다.
- 혼합건물의 공사항목에 관련된 공용자산인경우: 예; 놀이터, 길, 주차장 등에 각자산의 가치 확정과 공용목적 자산의 감가상각금의 가치확정을 각종자산의 가치와 혼합건물의 감가상각 금 분배의 원칙에 따라 한다.

2. 노동사고와 직업병의 보험자금 가입기준을 0,5% 까지로2017/06/01일부터 감소한다.

정부는 의령서 제44/2017/NĐ-CP호를 발급해서 필수적 사회보험기준을 노동사고보험과 직업병 보험자금에 같이 규정한다, 그에 따라 노동고용자는 매월에 노동사고보험과 직업병 보험자금에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기준근거로 급여자금에 대한0,5%로 처리한다..



0.5%

노동사고와 직업병의 보험자금 가입기준을 0,5% 까지로2017/06/01일부터 감소한다.



5% or 10%

보건 전용의 공구, 설비에 대한 VAT세율이5% 나 10% 인지?

3. 보건 전용의 공구, 설비에 대한 VAT세율이5% 나 10% 인지?

정부의 결정서 제 19/2016/NQ-CP호의2016/4/28일 과 제35/2016/NQ-CP호의2016/5/16일에 따르면 재정부의 통지서 제 26/2015/TT-BTC호의2015/2/27일에 변경하지 못한 시간동안, 수입기업 의 유리된조건을 위해 세관기관이 보건전용 공구, 설비로 신고된물건들을 통관절차를 해주고 신고기업의 각서와 법적책임 확인 문서에 근거해서VAT 5%기준을 적용해준다.

물건수입신고서의 등록 30일내에 기업은 물건수입신고된 세관기관에 보건부의 확인문서를 제출 해준 책임이 있다. 상기 기한후에 보건부의 확인서를 제출못하면 세관서류 보충제출을 VAT 10% 기준으로 계산하고 물건 통관날부터 세금의충분납세일까지의 지연납금계산도 포함된다.

보건전용 공구, 설비에 대한 수입물건의VAT 10%로 납세하고 보건부의 확인문서가 있는 기업인 경우에 세관기관은 기업의 과잉납세금액을 재정부의 통지서 제 38/2015/TT-BT호의2015/3/25일 에 4조 규정처럼 처리해준다.



4. 계약집행보장을 위한 계약서명직후 선지급금의 항목에 대한 영수증발급을 아직 하지않다.

Hà Nội 세국서는 계약집행보장을 위한 계약의서명직후 선지급수금을 하지만 수금시점에 서비스를 아직 공급하지못하고 계약진행을 하지않으면 그런 선지급항목에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지않나도 된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기업은 서비스공급전 혹은 그중에 선지급금을 수금하면 수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5. 특허권 사용료는 물건수입의 가치과세 금액에 합해야 준다.

현행규정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는 다음 3가지 조건 만족되면 물건수입의 가치과세금액에 합해야준다: “수입물건에 관련됨”, “구, 판매의 한조건으로 됨” 그리고 “실 결재가치혹은 결재할 가치중 계산되지 않음”. 그에 따라, 등록된 브랜드의 사용 특허권 이전계약의 상품수입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 지급해 야한 특허권 사용료항목은 수입물건의 가치에 합해야한다.

우리 GT(주)는 브랜드의 사용 특허권 이전계약을 하는 기업들에게 수입물건의 과세가치를 계산하고 검토를 해서 수입세 의무 준수의 보장을 해준 권고를 하고 싶다./.

Contacts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Phone: + 84 4 3850 1686
F: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Hanoi Office
National Head of Tax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Hanoi Office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Nguyen Hung Du

Tax Partner, Ho Chi Minh City Office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Hanoi Office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am Ngoc Long

Tax Director, Hanoi Office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Ho Chi Minh City Office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Ho Chi Minh City Office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Ho Chi Minh City Office
D +84 8 3910 9238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Ho Chi Minh City Office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 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www.grantthornton.com.vn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Vietnam
Phone:+ 84 8 3910 9100
F: + 84 8 3914 9101

